

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신청내용	화학물질명 (총칭명)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
	공동활용 자료 종류	[]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 [] 유해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	
	유예기간	년 월 일까지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“공동활용 자료 종류”란의 시험항목은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을 기재합니다.
- “유예기간”란은 희망하는 기간(해당 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범위)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